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78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서삼석 · 박용갑 · 이성운
이병진 · 김원이 · 신정훈
박수현 · 이개호 · 정을호
문금주 · 문대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자체와 농협 및 수협 등 농어촌지역의 협동조합이 지역 활동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를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농어촌에 위치한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대응 사업협력 사업 추진이 제한되며, 실제 법 제정 이후 2024년 10월 기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추진하는 사업은 전무함.

실제 일부 조합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에도 따른 보상이 없어 추진할 의욕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농어촌 지자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활용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가 매년 협력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성과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지급함에 따라 사업 독려를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우수사례의 발굴·확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농림어업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농림어업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포상·홍보
2. 지역농림어업 사업의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지역농림어업 사업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예산 지원 등

③ 국가는 우수사례 발굴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우수사례의 발굴·확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농림어업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1. 지역농림어업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포상·홍보</u> <u>2. 지역농림어업 사업의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u> <u>3. 그 밖에 지역농림어업 사업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예산 지원 등</u> <u>③ 국가는 우수사례 발굴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u>